

일상의 흐름을 바꾸는 여성주의 일/破/만/波
연세대학교 제 15대 총여학생회

feminist@yonsei.ac.kr / www.yonsei.ac.kr/~ysfem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 만들기
교수 성폭력 토론회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업 만들기”

수업시간에 발생하는
성차별적 · 성폭력적 발언사례를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제15대 총여학생회장 사회학과 4학년 김한선에
입니다. 길게만 느껴졌던 여름방학도 다 지나가고, 개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히 잘 지내셨는지요. 총여학생회도 2학기 사업을
준비하고 방학중 활동을 해나가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학내에는 여학생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예전보다는 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가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여학생들이 학교
를 편하게 다니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
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여학생회에서는 여학생들이 자신의 목소
리를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수업을 들으면서 불편하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성폭력적이고 성차별적인 발언
입니다. 수업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별다른 의도 없이 행해지는 언행들이 여학생들에게는 수업을
듣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이 여성에게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단지 입학울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말을 듣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집에서는 수업시간에 발생한 성폭력적·성차별적 발언을
한데 모으고, 이러한 발언들이 어떻게 문제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합
니다. 이 자료집이 성평등한 수업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셨으
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보내드립니다.

2003년도 2학기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성 폭 력 으 로 부 터 자 유 로 운 수 업 만 들 기





성폭력과 성차별로부터 자유로운 학교를 꿈꾸며

학내에서 구성원들간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끊임없이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 및 접수되는 사건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가시화의 정도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교수와 학생간의 성폭력 사건이다. 1994년 서울대 신청후 교수 성폭력 사건 이후로 상당수 묻혀 있던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대학에서 교수들의 성폭력에 의한 문제 제기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에는 서울대의대 ○교수 사건, 서울시립대 국문과 △교수사건, 한국교원대 ○교수 사건, 강릉대 ○교수 성폭력 사건 등이 학내에서 또는 언론 등을 통해서 문제제기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저하시키고, 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학습권을 침해시킨다. 교수와의 접촉이 잦은 대학원 과정에서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사건들이 피해자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침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에, 자신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교육권과 생활권을 침해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피해 학생들의 목소리가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학생이라는 위치에서 교수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교수 對 학생'이라고 하는 관계는 기본적으로 가르침을 주고받는 사이이지만, 사제간의 수직적 권력 관계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학내 현실을 감안할 때 학생의 입장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 찾기 및 문제 제기가 '도발', 혹은 '버릇없는 짓'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학점이나 학위 인정, 논문 통과, 진로 선택 등에 있어 교수가 갖는 영향력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학생에게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의 대학 내에서 학생의 위치가 교수에 비해 열등한 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성폭력에 대한 문제 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데 비해 교수들의 문제 의식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할 수 있겠다.

※ 아래의 가로침은 학문적 가로침뿐만 아니라 인간적 가로침까지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강의실 내에서 일어나는 언어적 성폭력의 경우 학생이 이의를 제기하기란 더더욱 어렵다. 다른 학생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문제 제기로 인하여 수업 분위기를 망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수업'이라는 공간에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함께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교수에게 '확실히 찍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용기있게 문제를 제기하여 교수에게 사과를 요청하더라도 진지한 대응을 받지 못하고 '농담인데 뭘', '수업 분위기 좀 좋게 하려고 한 소린데 뭘 그런 것까지...', '학생 너무 예민한 것 아닌가?' 등 변명 아닌 변명-심하면 2차 가해까지-을 듣게 되는 것이 다반사인 것이다. 결국 많은 학생들이 교수에게 직접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나 혼자만 참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괴롭게 한 학기를 마친다. 그리고 다시는 그 교수의 수업을 듣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만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는다. 다음 학기에도 어김없이 그 교수는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또다른 피해자가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폭력적 발언을 자주 하는 교수가 전공 필수 과목을 강의하고 있을 때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수업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강의실 내에서 일어나는 언어적 성폭력의 심각성이 간과되고 있음에 문제 의식을 느낀 총여학생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성폭력적·성차별적 발언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였다. 그리고 성폭력과 성차별로부터 자유로운 학내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목적 아래 2003년 5월 22일 '교수 성폭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수업 시간에 발생한 성폭력적·성차별적 발언 사례를 정리함과 함께 이러한 발언들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짚어 보았고, 학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지, 그 처리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그리고 수업 중 발생하는 성폭력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총여학생회에서는 2003년 5월초부터 약 3주간 총여학생회 메일(feminist@yonsei.ac.kr)과 웹사이트 '언니네'(www.unninet.co.kr) 내에 있는 커뮤니티 '교수 성폭력 사례집'의 익명게시판을 통해 최근 몇 년 간 학내에서 발생한 교수들의 발언에 대해 신고를 받았으며, 현재에도 계속 사례를 수집 중이다. 약 30여가지의 사례가 수집되었으며, 2학기에도 수업중 발생하는 성폭력적·성차별적 발언에 관한 신고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론회 후속 작업으로 자료를 학내에 부착하였고 자료집을 학내 모든 교수들과 강사들에게 발송하기로 하였다. 이 자료집에 실리는 사례들은 모두 2000년 이후 연세대학교에서 발생한 것이며, 강사와 교수의 구분없이 명칭은 '교수'로 통일하였다. 또한 소수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전공 수업이나 여학생들이 별로 없는 단과대학의 수업 등은 피해자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양 수업이 아닌 전공 수업에 있어서는 소속대학과 전공학과만 밝히는 것으로 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였다.

교수들의 성폭력적·성차별적 발언으로 인해 자신의 학습권과 생활권을 침해당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모든 학생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성차별과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내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수업시간중 성폭력적·성차별적 발언 사례 정리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언어 사용 및 수업자료 활용

수업시간에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다. 특히 교수들이 성행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먹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여학생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이러한 발언들은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을 인격적 존재가 아닌 성적 대상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수업을 듣는 여학생들에게 매우 큰 불쾌감을 초래함에도 ‘수업 분위기를 좋게 하는 농담’이라는 이유로 쉽게 묻혀진다. 여학생들이 즐겁게 ‘수업’을 받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흐려진다는 것과는 무관하게 말이다. 결국, 그 ‘분위기’라는 것은 남학생들의 수업 분위기이며, 여학생들은 이러한 ‘농담’에 의해 배제 및 소외된다. 게다가 가벼운 ‘농담’인데 그렇게 민감해질 것 있느냐는 남성적인 시선들과 강의실 안의 권력 관계에 있어 열등할 수밖에 없는 ‘학생’으로서의 포지션으로 인해, 여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 된다.

[사례 1] 2003년 1학기 문과대학 사학과 전공 수업 시간에 “왕이 공녀를 따먹으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사례 2] 2003년 1학기 공과대학 금속공학과 전공 수업이 끝나고 난 후 안색이 좋지 않은 여학생에게 “A야, 임신 했나?” 라고 하였다.

[사례 3] 2001년 1학기 현대사회와 심리학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 여학생에게 “학생, 학생은 밤업소 나가나?”라고 하였다.

[사례 4] 2003년 1학기 문과대학 영어영문학 전공 수업 시간에 페넬로페 신화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페넬로페가 형부인 테리우스 왕에게 강간당하는 장면을 설명하면서 왕이 처제를 “따먹었다”라고 표현하였다.

[사례 5] 2003년 1학기 문과대학 영어영문학 전공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다가 “꿀어먹었다”고 말하였다.

[사례 6] 2002년 겨울 원주 계절 교양수업 교수는 미학 전공자였고 평소 그림과 사진 등의 자료를 사용해 수업을 진행하였다. 낭만주의에 대해 강의하던 중, 먼 곳이나 미국에 대한 동경이 낭만주의 시조의 주된 주제가 되었다고 하면서 Edwin Long의 그림(Babylonian Marriage Market)을 보여 주었다. 그 그림에는 웃을 뻔한 몇몇의 여성들이 뒤돌아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것을 본 교수는 이런 곳이 모

든 남성들이 한번쯤 가고 싶어 할 동경의 장소가 아니겠느냐고 하였다. 또한 이 앞모습이 어떤지 궁금하지 않느냐, 아주 쉽다, 그림을 뒤집으면 된다고 한 뒤 거꾸로 그림을 뒤집은 파일을 보여주고 수업을 끝냈다.

성폭력 및 성매매에 대한 문제 의식 및 감수성 부재 혹은 부족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크지 않은 교수의 경우, 자신의 발언이 성폭력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 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주의조차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성폭력적인 발언을 한 후 ‘이것은 성폭력(혹은 성희롱)이 아니다’라고 발화자인 교수 자신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학생들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용기 있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덮어 버리며 학생들에게 더욱 큰 불편함을 주게 된다. 또한 수업 시간에 설명을 위한 ‘사례’로 성폭력 사건이나 성매매를 드는 일도 종종 있었는데, 이 때는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성폭력 사건에는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라고 보기 힘든 면이 없지 않으며 이러한 사건들이 희화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에 대한 비판이나 피해자에 대한 고려 없이 나오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사례 7] 2002년 2학기 법과대학 전공 수업 시간에 수업 교재인 ‘한법 강의’라는 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교재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면 남자애들은 막노동판에 나가서 일하면 되고, 여자애들은 몸을 팔면 된다는 말을 하였다. 그리고 덧붙여 “아~ 이거 또 여자애들이 성희롱이니 뭐니 하면서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냐? 그냥 들으라고”라고까지 말하였다.

[사례 8] 2002년 2학기 문과대학 사회학과 전공 수업 시간에 유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던 중 갑자기 “여러분이 성인이나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리방이라는 곳이 있다. 호스티스들이 유리 안에 들어가서 춤추고 뭐 그러는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사례 9] 2003년 1학기 사회복지학과 전공수업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시간, 프로이드의 ‘자기방어기제’에 대한 수업 중, ‘취소’라는 기제에 대해 예를 들면서 “하네 때리는 남편들 중에 폭력 쓰고 잉크코트 사주고, 다 이아 반지 사주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행동으로 자신의 폭력 행동이 없었다고 심리적으로 취소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남편에게 맞은 뒤에 반지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주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새 반지를 자랑하는데 그럴 때 주위 사람들은 또 맞았군, 그러죠”라고 하였다. 또한 자기방어기제 중 ‘보상’에 대해 설명할 때는 예시로 시골에서 자란 남성이 해외유학파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된 이야기를 하며 “그러면 이 결혼이, 완전 여자가 당한 거예요, 같이 MT가서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 여자를 선배가 덮쳐서 보보하고 뽀 해버린 거예요”라고 하였다.



자신의 성 체험에 대한 발언

수업 시간에 '남성' 교수가 자신의 성적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학생들은 자신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러한 말들이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발화된 것인가 하는 점은 너무도 뻔하기 때문이다. 교수의 말이기 때문에 못 들은 척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없는 난감한 입장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말들은 종종 수업 맥락과는 무관하게 발화됨으로써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사례 10] 2001년 1학기 현대 사회와 심리학 수업 시간에 자신의 섹스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섹스는, 신혼 초에는 레귤러 스타일로 했다가 점점 다르게 해야 한다. 처음엔 평범하게 해도 나중에는 다르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

결혼 및 가부장제에 근거하여 여성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발언

많은 여학생들이 졸업 후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자신의 커리어를 개발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강의실 안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행복=결혼해서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라는 편견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결혼과 인생의 행복을 무조건적으로 동일시하기 힘든 상황이나 '결혼'이라는 현실적인 제도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억압적 요소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다. 이러한 발언들은 대부분 '남성'의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혼의 주체를 남성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여성을 결혼의 '대상' 혹은 '객체'로 상정할 뿐만 아니라 가부장제에 대한 문제 의식마저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결혼한 여성'에 대한 편견을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한다는 점 역시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여학생들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못할망정 여성은 가사 노동과 내조에 힘써야 한다는 구시대적 생각을 전제로 하는 발언들이 학내에서 교수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담론들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들은 여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재생산해 낸다는 점에서 지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 11] 2003년 1학기 고사반 행정학 수업에서 '여자가 고시 붙으면 최고의 지위에 오르는 것이나, 그러면 결혼의 배우자 선택 범위가 줄어들다'고 하였다.

[사례 12] 2000년 1학기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전공 수업에서 '여자들이 대학에 다니는 것은 현모양처가 되기 위한 교양을 쌓기 위해서이고, 결혼을 잘 하기 위해서이다. 여자들은 심중지도를 해야 한다. 페미니스트들도 여기 있겠지만 그거 다 쓸데없는 것이다'라는 뉴잉스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사례 13] 2002년 1학기 생활한문 수업 시간에 칠거지악을 가르치면서 '여자가 애를 못낳으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쫓겨나야 한다'고 하였다.

[사례 14] 2001년(2002년)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전공 수업에서 재학 중에 시집을 가면 A학점, 졸업 후 바로 시집을 가면 B학점, 졸업 후 취직하면 C학점, 대학원에 가면 F학점이라는 농담을 하였다.

[사례 15] 2003년 1학기 고사반 행정학 수업 중, 예시를 들 상황이 있을 때마다 결혼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기를 즐겼다. 정책 대안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분석적 계층화 과정 분석법'의 과정을 결혼에 비유하여 설명하는데, 이 때의 결혼은 '자원을 가진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이 된다. 또한 여성 배우자의 조건은 얼굴, 몸매, 돈, 학벌 등으로 매겨진다. 이 분석기법을 '배우자 선택'이라는 문제에 적용하면 '최고의 배우자 고르는 문제'가 상위목표로 설정되고, 그 다음 이를 구성하는 요소의 우선순위로 얼굴, 몸매, 돈, 학벌 등을 의사 결정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한 후 상대 점수를 매겨 배우자 범위의 몇 명을 매칭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후 구성 요소를 돌씩 짝지어 매겨진 점수를 matrix에 기록하면서 몇 가지 수학적 계산을 하여 최고 점수의 배우자를 구하고, 이러한 과정에 의해 계산된 배우자는 최선의 배우자이므로 다섯 번 이하에 결혼하면 행복이 보장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사례 16] 2003년 1학기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전공 수업 시간에 '꽃이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시들어가는 걸 보면 시집못가고 죽는 여자가 생각나서 가슴이 아프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

[사례 17] 2003년 1학기 고사반 행정학 수업에서 '여자 나이가 20대라는 것 자체가 프리미엄이다'라고 하였다.

남성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외모주의(lookism)에 근거한 발언

'여성의 미모=경쟁력'이라는 공식이 통념처럼 되어 버리고, 예쁜 얼굴과 늘씬한 몸매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압박이 많은 여성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의 도중에 유독 '여성에게만' 외모 지상주의에 근거한 발언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분명히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비판해야 하고 지양되어야 마땅한 외모 지상주의를 당연시할뿐만 아니라 옹호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례 18] 2003년 1학기 생활과학대학 전공 수업 시간, 발표를 위주로 진행되는 수업이었고 교수는 평소 발표시의 정장 차림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 어느 날 발표를 맡은 학생이 치마 정장을 입고 화장을 하고 오자 출석을 부르던 중 그 여학생을 가리키며 '여러분~보십시오, 오늘○○가 발표를 위해 화장까지 하고 왔습니다. 평소 절대 안하던 화~장을 했습니다.', '치마까지 입었군요.',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하기 때문에 다리도 예뻐야 한다'고 하였다.

[사례 19] 2001년 1학기 현대사회와 심리학 수업에서 L교수가 여성의 성적 매력에 이끌리는 남성의 심리 구조에 대해 이야기한다며 여성을 '메주'라고 표현하는 등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였다.

2. 어떤 문제를 '계중'으로 분해하면서 상위목표부터 하위목표의 상대적인 강도와 효용을 숫자로 나타내는 절차를 거치는 것.



교수 성폭력 토론회, 그 이후

1. 교수 성폭력이 문제가 되는 이유

교수 성폭력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교수 성폭력'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이라는 단어 자체의 어감을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받아들이고, 따라서 '교수 성폭력'이라는 단어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성희롱'이나 '성차별' 같은 비교적 약한 어감을 가진 단어도 있는데 꼭 과격하게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써야 하는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폭력'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유형의 모든 행위'로 정의됩니다.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표현으로 인해 성적 인 불편감과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모두 성폭력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차별'보다 더 심한 무언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이 어떠한 기준을 적용해서 위계관계식으로 피해 정도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일의 정도를 어떻게 생각하든,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피해자에게 그것은 '폭력'이며 그것이 그가 특정 성(性)을 가졌기 때문에 입은 피해이기에 '성폭력'인 것입니다.

강의 시간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간혹 교수님의 특정 발언, 혹은 특정 자료 등을 '성폭력'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회 구조상 이런 것을 느끼는 학생은 보통 여학생들입니다. 반대로 남학생들은 그런 경우에 신나게 웃고 있기도 합니다. 남학생들의 커다란 웃음소리는 즐기고 있던 학생을 깨우고 삼시간에 가라앉았던 수업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주며 그에 따라 수업에 대한 집중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효과 때문에 일부러 여학생들이 '성폭력'이라고 느끼는 발언을 강의 중 빼놓지 않는다고 하시는 교수님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때 여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여학생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학생들처럼 그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웃었던 것은 아닙니다. 큰 목소리를 가지고 크게 웃는 남학생들이 주도하는 수업에서 여학생들은 그들에게 맞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학생들이 모두 눈치만 보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녀들이 누구보다도 그 수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은 웃어도 그 때의 성적인 불편함과 그에 따른 고민은 그 후에도 여학생들을 괴롭힙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나만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보다.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닌지? 하고 말합니다. 그녀들은 폭력을 당한 것도 모자라 풀리지 않는 고민을 끌어안고 계속해서 자책해야 합니다.

하지만 설사 그것이 내가 예민한 탓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고 해도 그것은 교수님의 말씀이기에 여학생들은 또 다시 그런 상황이 되어도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신이 정말로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하든, 수업 이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든, 하다못해 메일이라도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또 그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교수님이라도 학생의 말을 존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감정을 느낀 당시에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지니와 존경하는 교수님의 말씀을 논박한다는 것 역시 학생으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겪은 여학생들은 수업에 들어가는 것이 무척 두려워집니다. 지금까지의 상처도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 또 어떤 폭력을 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업 내용과 그런 감정들은 별개라고 말하지만, 기계가 아닌 이상 그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무척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녀가 수업에 들어가기 두려운 이유가 그녀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도 아니고 강의 내용이 싫어서도 아니라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은 폭력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수업을 받는 것은 학생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업 시간에 비하되고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2. 교수 성폭력 토론회

교수 성폭력 사건은 해결하기가 어렵고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함께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총여학생회는 지난 5월 22일에 '교수 성폭력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일어난 교수 성폭력 사례들의 정리와 분석, 실제로 사건이 신고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대처 방안을 중심 내용으로 한 발제와 그에 대한 질문과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그 자체로서 교수 성폭력에 대한 하나의 발전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공론화하는 것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총여학생회는 토론회 이후에 토론회를 정리한 자료를 각 단대와 중도, 학관 등 주요 건물에 부착하였고 이 자료집은 모든 교수님들과 강사님들께 발송됩니다.

3. 맺음말 - 피해자를 염려하시는 분들께

피해자를 염려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가끔씩 그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십니다. 그분들은 성폭력에 관한 책자, 혹은 강연회 등에서 피해자가 성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옳은 것인지를 배우고 피해자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조언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 즉 2차 가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왜 그 부당한 상황에서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느냐'고 피해자를 혼계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초인도, 성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기를 강요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피해자 또한 그저 평범한 한 사람입니다. 피해를 받은 상황에서 상처를 치유할 시간적 여유도 갖지 못한 채 그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사회적 편견에 부딪히거나 또 다른 상처를 입는 한 사람입니다. 또한 잘 알려졌듯이 성폭력 상황에서는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자괴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힘을 주지는 못할망정 그를 꾸짖으며 성폭력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헌신하라는 것은 피해자를 더욱 심한 자괴감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염려하는 마음과 성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 옳은 것입니다. 다만 조금 더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2000년 10월에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이 2001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며,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동등한 교육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이 학교 당국에게 있음을 명시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학칙 전문〉

- 연세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대한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내에서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대책과 보호절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① 본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 ② 제 ①항의 성폭력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적용되며, 이에는 교수(시간강사 포함), 직원,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을 포함한다.

제4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 ① 성폭력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성폭력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장 담당기관

제 1절 성폭력상담소

제6조 (설치)

여학생처 내에 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 (구성)

- ① 상담실에는 실장을 두며,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
- ② 상담실에는 상담원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 보고
4.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제 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제9조 (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10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교학부총장,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대학원교학처장(이상 당연직 4인), 교수 3인, 직원 3인, 학생 3인으로 구성하고, 교수위원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직원과 학생위원은 직원 또는 학생 관련 사안에만 참여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선임기준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2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특정한 인간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제12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
2.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3.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4.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13조 (회의)

-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여,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상담실이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성폭력 사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사안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제 3장 성폭력사건의 처리

제14조 (신고 등)

- ① 상담실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 ②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 ③ 상담실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상담실장은 신고된 성폭력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의 의결)

-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제16조 (징계 및 조치)

-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의 공개 사과
 2.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3.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제17조 (경비)

상담실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1999. 7. 1)로부터 신고되어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 연세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 18조에 의거하여 연세대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 가운데 본교에 재직 재학휴직 휴학 포함 중인 교원 직원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 사건에 적용된다.

제3조(성폭력상담실장)

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의 상담실장은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상담원의 자격)

상담원은 규정 제 8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자로 상담실장이 임명한다.

제5조(상담원의 수)

상담실에는 1인의 상담원을 두며, 필요시 상담원을 추가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의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② 성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 ③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의 보고, 단 조사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 ④ 연 1회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⑤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와 필요시 이의 고내 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
- ⑦ 성폭력 사건의 조사,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의 전과정 기록 보존

제7조(성폭력대책위원회)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하여 그 대책 수립 및 보고된 성폭력 사건처리 등 관련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다만 의료원과 원주캠퍼스는 별도의 성폭력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성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

- ① 위원회는 위원장(교학부총장),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대학원교학처장,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 교수 3인,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 연세대학교 노동조합(이하 조합)이 추천한 직원 3인, 총학생회장 또는 총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 총여학생회장 또는 총여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 대학원학생회장 또는 대학원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으로 한다. 단 직원과 학생위원은 정기회의와 각각 직원과 학생이 관련된 성폭력사건처리사건에만 참여하며, 이 경우 그 참여위원은 재직위원에 포함된다.
- ② 교수위원(당연직) 위원 포함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 ③ 위원회는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성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

- ① 성폭력사건처리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성폭력사건 이외의 사항은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직원 또는 학생이 관련된 성폭력사건처리사건이란 성폭력사건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일방이 직원 또는 학생인 사건을 말한다.

제10조(특별위원회)

- ① 위원회내에 특별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1조(소위원회)

- ① 위원회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2조(성폭력사건의 신고 등)

- ① 상담실은 성폭력사건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 ② 성폭력 피해자와의 상담시 그 피해자와 동성의 상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상담시 상담내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며,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 ④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심리치료를 담당하며, 이를 고내 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⑤ 상담실은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피해자, 가해자 및 제3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⑥ 상담실장은 조사결과를 성폭력대책위원장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성폭력사건의 심의 의결)

- ①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 ② 심의시 가해자와 피해자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사건심리에 필요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이외의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심의 의결과정은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사건의 심의 의결결과를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자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성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 당사자의 친족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재직된다.
- ⑦ 피해자는 특정위원에 대해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⑧ 제 ⑥, ⑦항의 경우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징계 및 조치)

- ① 위원회는 징계요구 또는 발의와 필요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으며, 복수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가해자의 사전동의를 조건으로 가해자의 공개사과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공개사과는 연세춘추 등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 ④ 위원회는 가해자에게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⑤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은 성폭력상담실이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교외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조치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⑦ 규정 제5조의 피해자 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정에 의해 처리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 ⑧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규정) 이 규정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시행된 날(1999.7.1)로부터 신고되어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반성폭력 학칙 운영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대한 규정」(이하 반성폭력학칙)은 2000년도에 제정이 되어, 2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총여학생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 학생회와 여성주의 자치단체에서는, 학교 당국은 학내 모든 구성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고, 성을 매개로 한 모든 폭력을 근절시킬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반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을 진행하였습다.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 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동등한 교육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성폭력 학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칙의 세부 항목에 있어서 규정이 세밀하게 되어 있지 않고,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항들 중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수 성폭력 피해자들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조항도 없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칙의 내용 외에도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상의 문제들 역시 많은 부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이나 감수성이 담보되지 않은 대책위원들에 의해서 성폭력 사건이 처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대를 안고 만들어졌던 연세대학교 반성폭력 학칙이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학칙의 내용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데 적합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학내 성폭력 예방과 근절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학칙이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이번 공청회를 통해 냉정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 노력이 실질적인 학칙 개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최 : 총여학생회, 사회과학대학생회,
문과대여성주의모임 모반
일시 : 2003년 9월 18일 (목)
장소 : 추후공지